

※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에 준하여 운영

Q21 CCTV 설치 후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?
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‘CCTV 내부 관리계획’을 작성해야 하며,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- * 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됨(1차 25만원, 2차 50만원, 3차 75만원)
- 내부 관리계획은 기관 내 안내 게시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.
 - * (게시방법) 장기요양기관정보시스템 → 요양자원 → 장기요양기관관리 → 장기요양기관정보등록 → 공지사항 탭에 첨부파일 업로드

Q22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담당자의 개념?

- “모니터링”이란 특정 시간(ex.야간시간)에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.
 - 종사자 근로 감시,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안됨
-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 관리책임자가 되며, 관리책임자 이외에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 등 시설의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 - 모니터링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